

정보보호센터 규정

□ 제정 : 2017. 05. 01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명칭 및 소재지)** ① 본 기관은 수원대학교 정보보호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② 본 센터는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각종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이 불법 유출·파괴·변경 되는 것을 방지하고, 본교 모든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 직

- 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.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- 제4조(기구 및 직원)** ① 센터에 팀장을 둔다.
② 정보보안팀 및 개인정보보호팀을 두고 전담직원을 배치한다.

- 제5조(업무분장)** ① 정보보안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1. 교직원의 정보보안 교육
 2. 본교 정보자산의 물리적, 관리적 보안
- ② 개인정보보호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1.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
 2. 본교 모든 부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업무

제3장 운영위원회

- 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평가
 2.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시행세칙

제7조(세칙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